개인정보보호위원회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11.12.(목) 10:00 배포 2026.11.11.(수) 20:00

개인정보위,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삼양그룹 소속 4개사 제재

-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서버의 폐기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적시 파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준수 당부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송경희, 이하 '개인정보위')는 11월 11일(수)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, **개인정보 보호 법규**를 **위반한 삼양그룹 4개社***에 대해 **총 5억 5,200만원의 과징금** 및 **1,620만원의 과태료 부과** 등을 의결하였다.

* **㈜삼양홀딩스**(그룹 지주사), **㈜삼양사**(설탕·제분업), **㈜삼양패키징**(포장용 플라스틱 제조)
삼양데이타시스템㈜(시스템 통합 자문·구축, 수탁사)

이들 사업자는 **파일서버에 대한 접근통제**, **주민등록번호 암호화** 등 **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**하였고, 이로 인해 **개인정보 유출사고**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 구체적인 **위반 내용**과 **처분 결과**는 다음과 같다.

< 삼양그룹 : 과징금 5억 5,200만원, 과태료 1,620만원, 시정명령 및 공표 >

신원 미상의 자(이하 '해커')는 2022년 7월 삼양그룹 내 **메일서버의 취약점을 이용**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, **데이터 이관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내부 파일서버**(이하 '해당 서버')의 **인증정보를 탈취**하였다. 이후 해커는 해당 서버에서 ㈜삼양홀딩스·㈜삼양사·㈜삼양패키징(이하 '삼양3사')의 **임직원 정보, 주주 정보, 관계자 정보 등 총 149,767명의 개인정보**(주민등록번호 82,750명)가 포함된 파일 약 85만개(1.3TB)를 **유출**하였다.

조사 결과, **삼양데이타시스템㈜**은 삼양3사의 **데이터 이관 완료 후에도 해당 서버를** 사고 당시까지 **외부망과의 통신이 연결된 상태**로 두었고, 이에 해커가 해당 서버로부터 삼양3사의 개인정보를 **단기간에 외부 클라우드로 유출**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.

또한, **삼양3사**는 **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**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**조치를 하지 않았고**, **㈜삼양홀딩스와 ㈜삼양패키징**은 법령상 **보존기간이 경과**한 일용직 근로자 급여정보를 **파기하지 않았으며**, **㈜삼양홀딩스**는 채용 과정에서 **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**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.

한편, **삼양3사**는 2022년 7월 유출사고 당시 삼양데이타시스템㈜에 **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**하고 있었으나, **2024년 12월**에서야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**계약서를 마련**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이에, 개인정보위는 **주민등록번호 암호화** 및 개인정보 처리 **업무위탁에 관한 문서화**를 **위반**한 **삼양3사**에 **각각 과징금 1억 8,400만원과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**하였다.

이와 함께, **개인정보 파기** 규정을 위반한 **㈜삼양홀딩스와 ㈜삼양패키징**에 **각각 과태료 360만원**, **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**한 **㈜삼양홀딩스**에 **과태료 360만원**을 **부과**하고, **안전조치 의무를 위반**한 **삼양데이타시스템㈜**에 **시정명령 등**을 의결하였다.

< 이번 조사·처분의 의의 >

이번 사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더 이상 **사용하지 않는 서버를 폐기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**히 함에 따라 발생하였고, **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미흡** 및 **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장기 보관** 등으로 정보주체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용이 중단된 서버는 폐기하거나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,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적시에 파기하는 등 **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**한다면 **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추면서 정보주체의 피해도 최소화**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

[붙임]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	책임자	과 장	윤여진 (02-2100-3111)
		담당자	조사관	곽영조 (02-2100-3113)
담당 부서 <공동>	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	책임자	팀 장	정진우 (061-820-2830)
		담당자	주 임	하재준 (061-820-284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

사업자명	위반 내용	위반 조항	시정조치(안)
㈜삼양홀딩스	• 개인정보 파기 위반	舊 보호법 §21①	• 과징금 1억 8,400만원 • 과태료 900만원 • 공표
	•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(안전조치 소홀)	舊 보호법 §24③	
	•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	舊 보호법 §24의2①	
	•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위반 (위수탁 문서화)	보호법 §26①	
㈜삼양사	•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(안전조치 소홀)	舊 보호법 §24③	• 과징금 1억 8,400만원 • 과태료 180만원
	•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위반 (위수탁 문서화)	보호법 §26①	
㈜삼양패키징	• 개인정보 파기 위반	舊 보호법 §21①	• 과징금 1억 8,400만원 • 과태료 540만원 • 공표
	•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(안전조치 소홀)	舊 보호법 §24③	
	•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위반 (위수탁 문서화)	보호법 §26①	
삼양데이타시스템㈜	• 안전조치 의무 위반(접근통제)	舊 보호법 §29	• 시정명령 • 공표

※ 2023. 9. 15. 이전 위반사항의 경우 舊 보호법(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, 2020. 8. 5. 시행) 적용